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엄셋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59
------	------

발의일자 : 2024. 5. 28.

발 의 자 : 엄셋별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보전과 편의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6조 ~ 안 제7조)
-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안 제8조)
-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안 제9조)
-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2조, 제10조, 제4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입법 예고: 2024. 5. 29. ~ 2024.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환경 및 시설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여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하여야 한다.

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을 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공생·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구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안양천)의 하천 공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 공간의 보전과 구민 이용에 관한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공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오염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환경 수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9조(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하천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하천보전활동 협력)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다

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
2. 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3. 하천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천공간이용시설(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하천시설물
1. 체육시설	가. 야외운동시설 나. 그 밖에 구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
2. 학습시설	가. 안양천 생태학습체험방, 하천 전망데크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3. 편의시설	가. 화장실, 조명시설, 음수대, 그늘막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4. 조경시설	가. 잔디밭, 꽃단지, 초지, 호안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하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5. 그 밖의 시설	그 밖에 구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관계 법령

□ 하천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

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